

의안번호	2207303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5.2.3.
추계번호	25D0083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호(고문 방지및고문피해 자지원위원회) 및 제8조(위원회의 구성)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둬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고문 방지 교육)	위원회는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0조(고문 피해 실태조사)	위원회는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3조(해외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공관에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신고처의 설치를 요청하고, 재외공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의 설치 여부와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신고처 설치현황을 공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5조(긴급 구제)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고문 피해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긴급 피난장소의 제공 등의 긴급구제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6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의무규정
7	안 제18조(법률 지원)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할 수 있고, 고문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소송대리 또는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등의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9조(보상금)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각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0조(의료 지원금)	고문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함	의무규정
10	안 제21조(생활 지원금)	국가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호(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및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9조(고문방지 교육)	
3	안 제10조(고문피해 실태조사)	
4	안 제13조(해외신고처 설치 및 공고)	
5	안 제15조(긴급구제)	
6	안 제16조(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미대상: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가테러단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와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가 출범(2024.7.)함에 따라,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7	안 제18조(법률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19조(보상금)	
9	안 제20조(의료지원금)	
10	안 제21조(생활지원금)	

2. 상세 사유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규모에 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제정안은 “고문피해자”를 고문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고문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중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안이 실시되면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과거사 관련 국가기구에 의해 확인된 국가폭력 피해자 수

□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 수당, 위원회 운영비용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내용만으로는 민간위원의 수, 위원회 개최 횟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고문방지 교육(안 제9조)

- 위원회가 체포·구금·신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방법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문”이란 공무원·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사인이 공무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이나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형집행 및 그 밖의 제재는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자기나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

나. 자기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

다. 자기나 제3자를 협박 또는 강요할 목적

라.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

- 참고로, 현재 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에서(2025년 기준 5,200만원), 법무부 소속 검찰·교정·보호직렬 공무원은 법무부 인권국에서(2025년 기준 1억 9,100만원), 기타 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2024년 기준 19억 4,500만원) 각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고문피해 실태조사(안 제10조)

- 위원회가 고문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그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해외신고처 설치 및 공고(안 제13조)

- 재외공관²⁾에 고문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신고처 설치현황을 공고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고처의 설치 및 공고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긴급구제(안 제15조)

- 고문피해자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고문피해로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생명과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의료·급식·의복 등,

2) 참고로, 2024년 11월 기준 설치된 재외공관의 수는 173개임

[표] 재외공관 설치현황(2024.11.)

지 역	상주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는 북한
				계
아주	24(11)	22(1)	1(0)	47(12)
미주	22(5)	13(0)	1(1)	36(6)
유럽	41(12)	9(1)	3(2)	53(15)
중동	17(5)	2(0)	0(0)	19(5)
아프리카	18(6)	0(0)	0(0)	18(6)
합 계	122(39)	46(2)	5(3)	173(44)

주: 한국의 경우, 분관, 출장소는 통계에서 제외
자료: 외교부

긴급 피난장소, 그 밖에 신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긴급구제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

□ 법률지원,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안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제정안에 따라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 대상인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의 수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